

의안번호	제 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76 호
----------	--------

제출연월일 : 2018년10월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1953년 조적조로 건립된 본청 대회의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화재위험성 등 건축물 안전성이 취약하고 협소한 규모로 행사 개최 및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부족한 소회의실 등을 건립하여 직원 및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2019~2022년간, 500ha) 확대조성 하여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대 등에 필요한 토지 중 매도 의사가 명확한 산지에 대하여 2019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본청 대회의실 건립》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현 대회의실)
- 사업기간 : 2019. 1. ~ 10.
- 건립규모 : 1,050㎡, 지상2층 (※ 현 대회의실 397㎡ 철거)
  - 1층 : 대회의실 600㎡ / 2층 : 소회의실 3~4개소, 부속실 등 450㎡
- 사업비 : 3,200,000천원 (도비 100%)
  - 건축비 3,028,000천원, 용역비 162,000천원, 기타 10,000천원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19. 1. ~ 12.
- 매입규모 : 2,045,152m<sup>2</sup> (단위 : m<sup>2</sup>, 천원)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공시가격	추정가격
	계	8필		2,045,152	2,300,894	3,000,000
1	청주 상당 미원 운암	산23	임	402,645	656,311	815,377
2	충주 수안보 온천	산39	“	158,678	209,454	249,924
3	“	산40	“	241,983	336,356	408,357
4	괴산 연풍 유상	산123-1	“	943,829	807,918	1,114,927
5	“	산88	“	33,322	29,990	41,237
6	“	산77-1	“	103,339	121,940	151,137
7	“	산79-1	“	150,645	129,253	203,376
8	“	산38	“	10,711	9,672	15,665

- 사 업 비 : 3,000,000천원 (도비 100%)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2,045,152	3,000,000				
	건물	1건	1,050	3,200,000				
	기타							
1	토지	충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402,645	815,377	2019	도유림 확대조성	변명섭 외 7	매입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39	158,678	249,924	"	"	김신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0	241,983	408,35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123-1	943,829	1,114,927	"	"	유상리 요동마을회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88	33,322	41,23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77-1	103,339	151,13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79-1	150,645	203,376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38	10,711	15,665	"	"	윤정배	"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충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1,050	3,200,000	2019	본청 대회의실 건립	충청북도	건립
	기타							

# 관계법령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b></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b>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b>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b>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